2024-교육혁신실-876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등

제3편 보건기준 | 제1장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441조 ~ 제449조

1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

-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거나 국소배기장치를 분해·개조·수리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**사용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동안 보존**
- 국소배기장치 점검 결과 이상 발견 시 즉시 청소·보수 등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실시

국소배기장치 사용전 점검사항

①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②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③ 흡기 및 배기 능력
④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 성능 유지에 필요한 사항

국소배기장치 점검 기록

① 점검년월일 ② 점검 방법 ③ 점검 구분 ④ 점검결과 ⑤ 점검자의 성명 ⑥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

2 명칭 등의 게시
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장업장 내 보기 쉬운 장소에 유해물질 정보 등을 게시
  (단,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 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는 제외)

게시 내용

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
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
③ 취급상 주의사항
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
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

*유해인자의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)의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 가능

3 설비 특례 (예외 조항)
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운반·저장하는 경우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 단단하게 포장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저장할 경우 **일정한 장소 지정하여 저장**

저장장소 조치사항

-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 설치

4 빈 용기 등의 관리, 청소
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운반·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 지정하여 보관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실내작업장,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**청소 등 실시**

5 출입의 금지 등
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 관계 근로자외 출입을 금지하고, 출입금지 내용을 게시

  (단, 중금속, 산·알카리류, 가스상태 관리대상 유해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L(기체 경우 부피 1㎥를 2L 환산) 미만 취급 작업장은 제외)
-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이에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·저장하며, 그 장소에는 **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**
-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 허락 없이 출입 금지

출입금지

6 흡연 등의 금지
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실내작업장 **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**,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
- 근로자는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 금지

7 세척시설 등
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세면·목욕·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용품과 용구 구비
- 세척시설 설치 시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

8 유해성 등의 주지

-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

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·화학적 특성
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
③ 취급상의 주의사항
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
⑤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
⑥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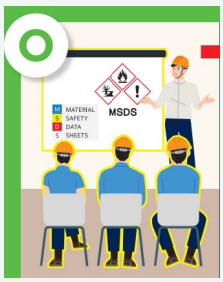

- 다음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해당 물질이 **급성 독성을 일으키는**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

① 디메틸포름아미드(68-12-2)
② 벤젠(71-43-2)
③ 사염화탄소(56-23-5)
④ 아크릴노니트릴(107-13-1)
⑤ 1,1,2,2-테트라클로로에탄(79-34-5)
⑥ 퍼클로로에틸렌(127-18-4)